

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

종 류	근 무 인 원	필 수 근 무 대 상
제1호 (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)	정원의 1/3이상	◦ 소방령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과·팀장 급이상 전 간부 ◦ 각 과·팀장이 지정하는 과·팀원 2명 내외 ◦ 통신·정보화 요원
제2호 (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,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)	정원의 1/5이상	◦ 과·팀장급 이상 전 간부 ◦ 각 과·팀 주무담당 ◦ 각 과·팀장이 지정하는 과·팀원 2명 내외 ◦ 통신·정보화 요원
제3호 (제1호 및 제2호 이 외에 비상근무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)	정원의 1/10이상	◦ 과·팀장급 이상 전 간부 ◦ 각 과·팀 주무담당 ◦ 통신·정보화 요원